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상관측 표준화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04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기상관측 표준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2
※ 참고자료	6
1.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 전 략 중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6

I. 제안경위

2024년 6월 14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상관측망에 대한 매년 계획만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체계적인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표준화 기본계획 수립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심의사항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및 안 제20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상관측의 표준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 규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3. <u>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u> 4. <u>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방식 표준화에 관한 사항</u> 5. <u>기상청 및 관측기관 등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u> 6. <u>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사항</u> ③ <u>기상청장은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u> ④ <u>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⑤ <u>기상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u>

현행	개정안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u><신설></u> 2. ~ 11. (생략)	<u>거쳐 수립·시행하고,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u> <u>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4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2. ~ 11.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¹⁾을 통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측기 및 기상관측장비 규격의 표준화,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간 통신 방식의 표준화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기상청 외에도 산림청은 산림재해 예방, 환경부는 대기오염 감시, 홍수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상관측 표준화 관련 중·장기적 계획 마련을 위해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관측 표준화 기본계획(5년)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1년)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심의사항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기상법」 제5조²⁾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국가기상 기본계획에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참고자료1)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기상관측 표준화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기상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유사·중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542

2) 「기상법」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확산·기술이전·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

1. 「기상법」 제5조에 따른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23-2027) 및 2023년도 시행계획 전략 중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략 1-3 첨단 위험기상 감시·관측체계 고도화 ③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기상측기 관리체계 강화 ○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형식승인 기술기준 확립 및 대상장비 확대를 위한 기상장비 시험절차 표준 기술 개발 추진(∼'24) ○ 다양한 관측환경을 반영한 기상측기 인증제도(성능인증, '26) 확대 추진 ④ 미래지향적 기상관측업무 기반 마련 ○ 국가 기상관측망 사이의 빈 공간을 채워 더욱 꼼꼼한 기상관측자료 획득을 위한 지자체·민간 보유 관측자료 활용 방안 마련 ○ 지역별 학계, 연구기관 중심의 위험기상 집중관측 체계 마련으로 기상인력 양성 및 지역별 위험기상 진단·분석 역량 향상 도모 ○ 비(非) 표준 기상관측데이터 품질검사 체계 마련으로 기상관측자료 분석 및 품질관리 강화 ○ 격자화된 디지털 기상·기후데이터 생산 및 활용체계 강화	전략 1-3. 첨단 위험기상 감시·관측체계 고도화 ○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기상측기 관리체계 강화 -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체계 개선 ※형식승인 대상측기 확대(10→16종)에 따른 기술기준 마련, 및 형식승인 경과 알림서비스, 사전 컨설팅 제도 활성화(연중)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시험운영(11월~) 및 인증장비 도입(12월) - 간이형 기상측기의 성능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및 기반 마련 ○ 미래지향적 기상관측업무 기반 마련 - 정부, 지자체가 보유한 고품질의 기상관측자료 확보 및 공동활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상 전문기관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2월~) - 지자체·민간에서 운영중인 도시기상관측자료 현황, 활용성 분석 및 기후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기준 차등화 등 품질검사 체계 개선(11월)